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06

발의연월일: 2022. 1. 14.

발 의 자:서일준·김승수·김용판

박 진・양금희・윤한홍

이 용・이주환・조명희

최형두 · 추경호 · 하영제

홍문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・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위해 일정이상의 면적 이상이속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치단체의 장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).

법률 제 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2제4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"를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에 따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(이하 "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(이하 "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(이라 한다)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

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안 혂 제17조의2(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제17조의2(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) ① ~ ③ (생 략) 지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-----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제주특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제주특 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 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 사"라 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 사"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분 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| 제40조에 따른 특별시 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(이하 "인구 1 00만 이상 대도시의 장"이라 한 다)과 -----